

# 「KB본인확인서비스」이용 약관

# 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주식회사 국민은행(이하 '은행'이라 한다)이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정보통신망법'이라 한다)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으로서 '은행'의 KB국민인증서(이하 '인증서'라 한다)를 통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'은행'과 '이용고객' 사이의 권리, 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 제2조 (용어의 정의)

-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1. '본인확인서비스'란 '은행'이 이 약관에 동의한 '이용고객'을 대상으로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Application 등에서 '이용고객'의 본인확인입력정보를 이용하여, '은행'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- 2. '본인확인입력정보'란 본인확인을 위하여 '이용고객'에게 발급된 '인증서' 및 '이용고객'이 입력하는 '인증서' 비밀번호 등 부가정보를 말합니다.
  - 3. '본인확인대체수단'(이하 '대체수단'이라 합니다)이란 '이용고객'이 '은행'으로부터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'인증서' 등 '이용고객'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.
  - 4. '본인확인기관'이란 '이용고객'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자로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 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.
  - 5. '이용고객'이란 '은행'으로부터 '대체수단'을 발급받은 고객으로서 '이용기관'의 서비스에서 '본인확인서 비스'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  - 6. '이용기관'이란 온라인 상에서 '이용고객'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기타 '이용고객'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'이용고객'에 대한 본인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, 단체, 기업(법인, 개인) 등을 말합니다.
  - 7. '중복가입확인정보(Duplication Information: DI)'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'이용고객'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이 '이용고객'의 주민등록번호, 웹사이트 식별번호 및 본인확인기관간 공유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합니다.
  - 8. '연계정보(Connecting Information : CI)'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·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합니다.

# 제3조 (본인확인서비스 이용 방법)

- 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'이용고객'은 약관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등 은행 및 이용기관 등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절차를 준수한 '이용고객'이 자신의 '대체수단' 및 '본인확인입력정보'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화면 등에 정보를 입력하고,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'본인확인서비스'를 이용할 수



있습니다.

- ③ 은행은 본인확인서비스 신청 채널 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역에 대한 조회기능을 제공합니다.
- ④ '본인확인서비스'는 '이용고객' 본인이 직접 신청·이용하여야 하며,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거나 '본인확인입력정보', '대체수단'을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.

# 제4조 (본인확인입력정보 및 대체수단의 관리 등)

- ① '은행'은 '본인확인서비스' 제공시 '이용고객'이 사용한 '대체수단'과 입력된 '본인확인입력정보', '이용기관'이 제공하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, '이용고객'이 요청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② '이용고객'은 자신의 '본인확인입력정보' 및 '대체수단'을 제3자에게 자에게 누설·유출·양도·대여·사용위임 및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, '대체수단'의 분실·도난·위조·변조 또는 '본인확인입력정보'의 누설·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- ③ '이용고객'은 '본인확인입력정보' 또는 '대체수단'의 부정 발급, 분실·도난, 도용, 탈취, 위·변조, 누설· 유출,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의 변경 등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'은행'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.

# 제5조 (연계정보,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제공)

- ① 은행은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연계정보,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이용기 관에게 제공합니다. 이 경우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는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값을 수신받아 제공합니다.
- ② 은행은 아이핀 본인확인기관과 안전한 방식으로 통신망을 연결하고 이용고객이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때마다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요청하여 전달 받습니다.
- ③ 이용고객의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정확성은 생성 주체인 해당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④ 은행은 본인확인 결과로서 해당 '이용고객'의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내외국인 여부, '중복가입확인정보' 및 '연계정보'를 '이용기관'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 제공된 제공된 정보는 각 '이용기관'이 '이용고객'과 체결한 약관, 계약에 따라 운영·관리·폐기됩니다.

# 제6조 (서비스 이용시간)

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대체수단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7조 (서비스 이용제한)

- ①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대체수단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- 1. 은행이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거나, '이용고객'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
  - 2.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유지·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
- 3. 정전,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
- 4. 이용기관과의 계약 종료. 정부의 명령/규제 등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
- 5. 기타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
- ② 이용고객은 은행이 별도로 고지한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8조 (사고·장애 시의 처리)

- ① 이용고객은 KB국민인증서 이용매체 및 인증서 비밀번호의 도난, 분실, 위조, 변조 또는 거래 절차 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폐기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② 은행은 이용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고 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9조 (은행의 의무)

- ①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신청한 날부터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합니다.
- ② 은행은 이용고객의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며,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③ 은행은 이용고객에게 본인확인서비스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#### 제10조 (이용고객의 의무)

- ① '이용고객'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② '이용고객'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'본인확인서비스'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.
- ③ 그 밖에 이용고객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은행의 사전승낙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.

# 제11조 (손해배상 및 면책)

- ① '이용고객'은 대체수단의 도난, 분실, 위조, 변조 등의 거래절차 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② '이용고객'으로부터 대체수단 폐기 요청을 은행이 받았음에도 은행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③ 은행은 본인확인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'이용고객' 또는 '이용기관'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 다만, 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.

# 제12조 (약관의 변경)

① 은행이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변경 예정일 직전 1개월 전에 인증서 발급 앱, 홈페이지 및 은행의 영업점에 게시합니다. 다만, 법령 또는 제도변경 등으로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인증서



발급 앱 및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합니다.

-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 은행은 이용고객에 전자우편, SMS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.
- ③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"이용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.
- ④ 이용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-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을 포함)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용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.

# 제13조 (약관 외의 준용)
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「정보통신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, 관련 행정규칙, KB국민인증서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적용합니다.

# 제14조 (관할법원)

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, 은행과 이용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며,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15조 (준거법)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.

# 부 칙(2022.11.29)

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.

# 부 칙(2023.1.9)

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.

#### 부 칙(2023.12.15)

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.